

-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-

광주광역시 특정감사 결과

(※ 재심의결과 기관장 경고 “취소” 처분 반영)

I. 감사개요

1. 감 사 명 : 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 특정 감사
2. 감사범위 : 지하철 역사 연결통로 개설 업무 적정성 등
3. 감사기관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
4. 감사기간 및 감사반
 - 가. 감사기간 : 2018. 7. 31. ~ 8. 3.
 - 나. 감 사 반 :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등 3명

II. 감사결과

1. 지적사항 : 1건(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)
2. 처분사항 : 행정상 처분 1건, 신분조치인원 1명(당초 2명 대비 △1명)

행정상 처분		신분조치인원	
계	주의	계	중징계
1건	1건	1명※	1명

※ 당초 “기관장 경고” 가 재심의결과 취소되어 1명 감소

III. 지적사항 세부내역 (1건)

1. 제목 :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

2. 지적내용

- 공사에서는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시 “업무협약 관리기준”에 의거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부서협의 등을 거쳐 사장 서명으로 협약을 하여야 함
- 하지만, 20〇〇.〇〇월 당시 ☆☆☆☆역 역장이었던 〇〇〇은 (주)◇◇◇◇(대표이사 △△△)로부터 신축 오피스텔과 지하철역사를 연결하는 통로개설 업무협약 요청이 오자 관리기준에 의한 업무권한 등 제반사항 검토, 부서협의, 사장보고 없이 단독으로 협약서를 작성·서명하였음
- 이로 인하여 해당 협약서는 “☆☆☆☆역 □□□□□” 분양광고에 사용되어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홍보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사의 신뢰저하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

3. 조치할 사항

가. 행정상 주의

- ☆☆☆☆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(20〇〇.〇〇.〇〇.)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「업무협약 관리기준」을 준수하도록 조치

나. 중징계 처분

- 관련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「인사규정」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“중징계” 처분 요구

다. 기관장 경고 : 재심의결과 “취소” 처분

- 취소사유(감사위원회 판단) : 해당 민원처리가 팀장전결로 처리되고 사장보고가 없어 관련사항을 사장이 인지할 수 없었고, 개인 일탈 행위인 점,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직접적이지 않고 우려된다고 한 점 등으로 판단하여 기관장 경고는 과도하다고 인정(감사위원회-12584호, 2018.12.03.)